

# 감사원, 2단계 부실공사방지대책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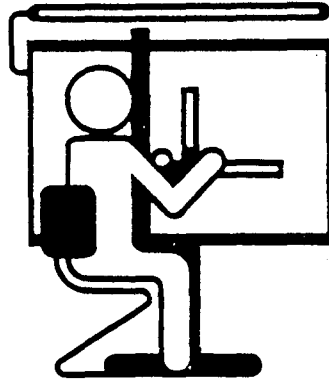
감사원이 지난 9월5일 발표한 2단계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따르면 중대한 부실을 야기시키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, 공사부실정도가 중대하거나 부실을 빈번히 야기시키는 공사집행기관장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는 등 2단계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마련, 시행에 들어갔다.

이와함께 부실공사근절에 시급한 관련제도의 조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.

PQ제를 확대하고 덤핑입찰시 발주기관이 기술능력 시공경험 자격을 평가한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, 발주기관의 품질보증계획서 품질검사절차서 등의 제시제도, 건설업체의 사업관리절차서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서 등의 제출제도 공사품질보증 관리체계의 국가인정제도 등을 도입토록 하며 준공 및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토록하는 한편 공사용 자재의 관급제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.

감사원의 2단계 부실공사방지대책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①소관공사 전반이 부실할 경우



관련공직자 책임추궁

②부실시공부문은 철거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저하시에는 이에따른 손해를 보전토록 하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강화

③부실시공다발업체에 대해 특별관리 및 집중감사

④보도블록, 정화조, 아파트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사 감사강화

⑤부실공사 근절에 시급한 관련제도의 조속개선추진

⑥PQ심사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성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.

※감사원이 발표한 2단계 부실공사방지대책 세부계획은 다음 9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.